

#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1호  
2009. 10.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신재철 ■ 편집인 염민호, 김소영  
■ 주소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405호  
■ TEL 062-530-0625 ■ FAX 062-530-2359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 교육개혁의 우선순위: 학교장 리더십의 혁신

허 병 기(한국교원대학교)

### 1. 분명한 개혁 노력과 그 비용

교육개혁이라는 말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말 앞에 가장 자주 붙는 말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교육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는 말일 것이고, 아울러 교육과 관련하여 그만큼 많은 불만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정부와 교육청 같은 교육관서들은 끊임없이 교육개혁안들을 내어놓고 있고, 많은 연구소와 학자들은 교육개혁 방안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저기서 교육을 개혁할 묘안 찾기에 분주하다. 그리고 거기에 큰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되고 있다. 단위학교로의 권한 위임을 통한 책임경영 같은 것은 이미 진부한 것이 되었고, 최근에만도 교원평가, 중 고등학교 다양화, 각급 학교 일제고사 실시, 학교정보 공개, 사교육비 경감, 미래형 교육과정 등 많은 개혁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 많은 개혁안들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집단은 개혁안의 시행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그 당위성을 역설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집단은 그 개혁안의 적용이 가져올 부작용을 내세우면서 그 부당함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의견 불일치는 일

상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 집단 간의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집단간의 '적의'가 느껴질 만큼 서로간의 불신과 배척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교육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금의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집단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오가 뒤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개혁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한지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값비싼 개혁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 배우고자 학교로 모여드는 학생들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학교를 일터이자 삶의 실현장으로 삼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학생의 양육자이자 생활인인 학부모들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 2. 명분과 실제의 거리

막대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또 개혁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엄중한 추궁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교육개혁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를 이해한다. 관련 기관이나 부서가 자신의 조직이나 예산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개혁을 빌미로 '일 늘리기'를 할 수 있다는 소위 관료주의 병폐의 한 가지를 상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교육현실은 분명한 개혁의 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교육계는 뭔가 변해야 할 절실한 이유를 안고 있다. 그것들은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모든 교육개혁안들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치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학생이 학생으로서 잘 배우게 하고자 하고, 교원이 교원으로서 잘 가르치면서 보람있는 교직생활을 하게 하고자 하며,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학교를 통해 만족을 얻게 하고자 한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적 자원의 낭비 없이 학교 교육을 통해 쓸모있는 자산을 확보하게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그것이 모든 교육개혁안과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표방하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안들은 그러한 명분을 얼마나 충실히 실현해 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간 개혁의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거기에 들인 '비용'에 비해 얻은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명분'과 정반대로 치닫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물론, 개혁안 자체가 교육적 대의에 어긋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실재는 파악하기 힘들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어서 변화를 위한 어떤 조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지 예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모든 개혁안들은 기대되는 효과를 장밋빛으로 그려낸다. 그러나 교육의 실체는 그것대로 고집스러운 속성이 있어 개혁자들이 내세운 명분을 쉽게 따라주지 않는다. 백약을 써도 사교육의 생명력은 아직 왕성하기만 하다. 갖가지 법적 장치와 윤리강령을 만들어 내도 학교 내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는 아직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표방하며 헤아릴 수 없는 시책과 현장지도가 있었지만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실 수업은 아직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지향하면서 일제고사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그 여파로 가지각색의 일들이 학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실제'의 현상 중 많은 것들은 해당 개혁자들이 표방한 '명분' 혹은 교육의 원리와 상충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더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학생을 더 힘들게 하고, 교사로 하여금 더 갈등에 싸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자기 학교 일제고사 성적을 까먹지 않게 하려고 일반학급의 꼴찌 학생을 일제고사 성적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특수학급으로 보냈다는 어느 학교에 관한 신문 보도는 우리를 심히 우울하게 한다. 그런 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사례 수의 많고 적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교육개혁이 내거는 명분과 그것이 펼쳐지는 실제 간에는 거리가 있다. 교육의 현상이 실질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교육개혁이 실패하거나 겹도는 현상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정책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개혁의 표적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 3.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는 학교장을 변화시키는 것

교육개혁이 실패하거나 겹도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개혁의 표적과 우선순위에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개혁의 순차적 선순환 과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는 학교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교육(학교)의 '실제'를 움직이는 중심에 학교장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명분과 실제 간에는 거리가 있다. 교육개혁이 표방하는 명분에는 교육의 실제의 변화가 담겨 있지만, 명분은 그 실제에 가 닿아 그것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학교가 변해야 하는데, 그 학교는 저 멀리서 내세우는 명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곳에 존재하는 오랜 역사이고, 관행이고, 문화다. 학교장은 그러한 것 자체를 이루는 한 요

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작동시키는 중심 동력이다. 그 동력은 학교라는 교육현장의 실재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모두 작용한다. 학교장이 갖는 그러한 힘은 곧 학교장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장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달리 말해 그의 리더십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학교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실로 난망한 일이다. 학교장이 변화하면, 학교장의 성숙한 리더십이 확립되면, 설혹 교육의 환경과 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학교라는 교육의 실재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교육은 지극히 인간지향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의존적인 일이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특히 교원들이 어떤 생각과 포부와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교육의 실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을 경우 의미있는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말해 준다. 학교장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후자의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추리가 가능하다. 비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설혹 어떤 교육개혁안이 좋은 취지를 지닌 채 그에 부합하는 실행방안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안목과 지혜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교사들을 이끄는 그의 감화력이 보잘것 없다면, 그 '좋은' 개혁안은 학교 현장에서 결코 꽃피울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자원 낭비, 학교 현장의 혼란, 교사들의 염증과 냉소, 관련 집단 간의 갈등과 잡음 등 실패한 개혁의 후유증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낙관적으로 보아 학교장의 교육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성숙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할 때, 이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호적인 여건의 변화가 없어도 학교의 변화는 가능할 것이며, 심지어 미흡한 면이 있는 개혁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하면서 개혁의 취지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개혁의 우선적 순위와 표적은 학교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의 리더십을 혁신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현재의 일반적인 학교장 리더십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전제한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행사되는 일반적인 학교장 리더십으로는 우리 학교 교육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학교장 리더십은 크게 달라져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의 마련이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리더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포괄적인 방식의 제안이겠으나 한 가지를 제시한다면, '학교 리더십' 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국 차원의 기구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구의 주요 기능은 학교지도자의 양성 및 현직 교육, 학교경영이나 학교혁신 등과 관련된 리더십 문제 컨설팅, 학교리더십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학교리더십 연구 수행, 학교지도자의 네트워크와 협동적 전문활동의 거점, 학교리더십 관련 전문인력 공급 등으

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여 학교지도자 교육과 양성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학교지도자들이 전국적 네트워크 속에서 활발히 교류하면서 학교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가게 한다면, 우리의 학교는 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은 매우 크고 건강한 발전이 될 것이다.

교육의 실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교육개혁 노력들이 내세우는 명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문제, 즉 학교리더십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역말단적인 몇 가지 인사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크고 과감한 발상의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장을 변화시키는 일에서부터 교육개혁 노력이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는 학교장을 변화시키는 것〉



## I 논단 II

# 미국의 학부모 참여 정책

차 성 현(한국교육개발원)

미국의 학부모 참여 정책은 조지 부시 행정부(George W. Bush Administration)의 초·중등 교육 개혁법으로 잘 알려진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학부모 참여에 관한 조항인 1118조(Title I, Part A, Section 1118,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는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실, 주 정부,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 1. 학부모 및 학부모 참여의 개념

미국 초중등교육법의 9101조 31항(Section 9101(31), ESEA)에 따르면, 학부모란 아동에 대한 법적 인 보호자 혹은 부모의 대리권(loco parentis)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부모나 양부모, 또는 법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개인 등이 학부모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학부모 참여(parent involvement)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및 여타의 학교 활동과 관련하여 쌍방향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ection 9101(32), ESEA). 나아가 이러한 학부모 참여는 1) 자녀의 학습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 2)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3) 자녀 교육의 파트너로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 4)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여타의 학교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학부모 참여 정책의 추진 방향

미국의 초중등교육법(Title 1, Part A, ESEA)에 나타난 학부모 참여 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전과는 달리, 학부모 참여 정책의 추진 체제로서 주 정부, 지역 교육

청, 단위 학교 등 추진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추진 주체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 교육부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해 단위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지역 교육청의 사업 운영 계획을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Title I funds)을 받는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 활동, 학생 평가, 학교 경영·관리 등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부모들과 함께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 및 이용 가능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를 통해 지역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1118조에는 학교와 학부모가 학교-학부모 협약(School-Parent Compact)을 맺도록 하여, 학생의 성공적 학교생활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일체의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주 정부의 교육 내용 및 학업 성취 기준, 학업 성취도 평가, 그들 자녀의 학업 성취 점수, 다른 학생 집단 및 학교의 학력 수준, 학교의 졸업률 및 교사의 질적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력 부진이나 학교 폭력의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학교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모든 학부모들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 획득 및 의사결정의 참여, 학교-학부모 협약서 작성 등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참여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참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등과 같은 실질 경비를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부모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d.gov/programs/titleiparta/parentinguid.pdf> 및 [http://www.pacer.org/mpc/pdf/titleipip/NCLBTitleI\\_Section1118.pdf](http://www.pacer.org/mpc/pdf/titleipip/NCLBTitleI_Section1118.pdf) 참조).

### 3. 학부모 참여/지원 프로그램

#### 가.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s)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는 초중등교육법(Title V, Part D, Subpart 16)에 따라 학생의 학력 향상 및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연방 교육부의 대표적인 학부모 참여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의 형태로 연방 교육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연방 교육부가 심사를 통해 선정 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연간 40만~80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미 PIRC 지원 센터(The National PIRC Coordination Center)를 통해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는 각 지역의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는 초중등교육법 5563조(Section 5563, ESEA)에 따라 적어도 지원금의 50% 정도를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저학력, 낮은 영어활용 능력을 가진 학부모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의 최소 30% 정도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센터의 구체적 활동 영역으로는 1) 초중등교육법 1116조(Section 1116, ESEA)에 규정된 학부모의 학교 선택 및 이용 가능한 교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 2) 학부모와 교직원들 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파트너십 지원, 3) 학교 운영 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 평가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워크숍, 간담회, 출판물을 통해 학부모, 단위학교, 지역교육청에 전파, 5) 학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단위 학교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술적 자문 제공, 6)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교육청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ed.gov/programs/pirc/index.html> 참조). 예컨대, 텍사스 주(Texas)의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는 문화 간 발전 연구 협회(Intercultural Development Research Association)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생, 교사 간의 간담회, 학부모 리더 교육, 지역 간 학부모 협의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인디애나 주(Indiana)의 가정-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센터(Indiana Center fo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artnerships)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센터 설립, 학교의 학부모 친근성 평가, 학부모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 지원, 학부모 리더 훈련, 아버지 자원 봉사단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나. 학부모 자문 위원회(Parent Advisory Councils)

교사-학부모 협의회(Parent-Teacher Association) 혹은 학부모회(Parent Association)는 학교 내의 교사-학부모 혹은 학부모들 간의 자율적인 학부모 참여 조직으로 많은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반면, 학부모 자문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 학부모 자문 위원회는 보통 주 정부나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운영된다. 교사-학부모 협의회 혹은 학부모회와는 달리, 이 위원회는 학교 교육 및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학부모 자문 위원회는 주 정부 혹은 지역교육청의 교육 및 학부모 참여 정책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메릴랜드 주 정부의 학부모 자문 위원회(M-PAC : Maryland' Parent Advisory Council)는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 125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참여 위원회, 소통 위원회, 교육 문제 위원회의 하위 위원회를 갖추고, 학부모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토대로 주 교육부 장관과 주 교육위원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marylandpublicschools.org/MSDE/programs/familylit/mpac> 참조).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받는 학교에서는 타이틀 I 학부모 자문 위원회(Title I Parent Advisory Council/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자문 위원은 보통 학부모, 교직원,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단위 학교 타이틀 I 프로그램 및 학교-학부모 협약을 비롯한 단위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다. 학교-학부모 협약서(School-Parent Compact)

연방 정부의 타이틀 I 보조금을 받는 모든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1118조(Section 1118, ESEA)에 따라 학교-학부모 협약서를 학부모와 함께 작성하고, 정기적인 학교-학부모 협의회를 통해 협약서의 내용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협약서에는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한 내용이 포함된다. 연방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학부모 협약서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단위 학교 협약서에는 학생의 학업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표준 학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협약서의 내용으로는 출석 및 숙제 점검, TV 시청 지도, 교실 수업 참여 및 참관, 학업 지도를 위한 협의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회 참석 등의 활동들이 예로 제시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학부모 참여 정책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5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정부 조직 내에 학부모 정책팀이 신설되어 학부모 역량 강화,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 서비스 지원 확대 등 학부모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부모 참여 정책 수립 시 고려할 만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학부모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법에는 학부모 및 학부모 참여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자녀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학부모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안정적 재정을 통한 지속적인 학부모 정책 수립 및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중앙 정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가정 등 학부모 참여 정책의 추진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진 주체 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추진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개발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 정보 자원 센터(PIRC)나 학부모 자문 위원회와 같은 미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셋째, 사회적 배려 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 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학부모 참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맞벌이, 다문화, 신빈곤층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계층의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초·중·등교육법 1118조에는 학교와 학부모가 학교-학부모 협약(School-Parent Compact)을 맺도록 하여, 학생의 성공적 학교생활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 | 논단 II |

# 핀란드의 교육 동향

이태상(상지대학교)

핀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인구 5,200,000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2000년대 들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지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나타내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도록 기여한 핀란드의 교육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의미로운 일일 것이다.

### 1. 핀란드의 교육 개요

핀란드의 학제는 초등교육과 기초중등교육이 통합된 기본 교육과정(7-16세, 9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상급 중등교육과정(3년), 전문대학(polytechnic)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며 종합학교를 이수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소정의 장학지원혜택(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교육관련 예산은 지방정부가 54.7%를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45.3%를 부담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7학년도를 기준으로 GNP의 약 6.5%를 공공 교육부문에 지출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종합교육관련 예산이 3,667백만 유로로 전체의 3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과연구가 1,806백만 유로로 전체 예산의 18.1%의 비중이며, 직업교육이 1,318백만 유로로 1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역차원의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언어와 음악교육, 혹은 국제화에 강조점을 둘 경우 해당 학교의 교과과정이 다른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핀란드 학교 교육에서 달성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개별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비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표 1〉 핀란드의 교육예산 현황(200-2007)

(단위: million euro)

구분\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7
취학전 교육	109	249	254	272	285
종합교육	3,180	3,206	3,278	3,538	3,667
일반상급중등교육	585	587	583	618	635
직업교육	1,131	1,147	1,193	1,264	1,318
도제교육	112	116	129	139	169
기술전문학교	654	703	711	762	784
대학교육&연구	1,587	1,611	1,664	1,736	1,806
기타교육	346	356	351	374	389
행정	188	179	182	191	199
학생학비보조	753	774	735	740	731
합 계	8,645	8,929	9,080	9,634	9,985

출처 : Educational Statistics, Statistics Finland.

## 2. 종합학교의 발전

핀란드의 교육은 1970년대 중반의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도입 이전에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학교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기회도 능력에 따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핀란드에서 종합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학교는 서로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 심지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까지 포함된 교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국민통합의 결실을 가져 왔으며, 누구나 일정수준의 교육적 성취 정도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핀란드의 종합학교는 영국의 종합학교나 우리나라의 평준화정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는 종합학교의 학생구성의 이질성을 교육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 수업실제와 교사양성과정에서도 이질적인 학생집단의 지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종합학교는 통일된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언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별로 특성화된 학교로 세분화하고 있다.

핀란드의 종합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과정에 해당하며, 7세-16세까지 학생들이 10학년과정(1-9학년까지는 의무, 10학년은 선택)을 이수한다. 저학년 과정(1-6학년)에서는 학급담당교사로부터 모든 과목을 교육받으나, 고학년 과정(7-9학년)에서는 과목별 교사가 교육한다. 또한 종합학교는 외국어과목의 비중이 높아, 3학년 때부터 공용어인 스웨덴어나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중에서 1개 언어를 선택하여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 외국어가 추가되어 학생들에게 외

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핀란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수업료, 교과서, 급식 등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학교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나, 국가보조금(100%까지 가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 종합학교 교육을 위한 교원교육 시스템

핀란드의 종합학교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학교 내의 이질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육당국은 질 높은 교원양성 과정을 유지하고, 현직교원들이 재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합학교 도입과 함께 이를 위한 교사양성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공통의 교생실습과정을 요구하고 공통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중 어디에서 교사를 양성할 것인지 등은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1971년에 통된 교원교육법에서는 종합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며, 초등의 학급교사와 중등의 과목교사로 분리하여 양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핀란드에서 교직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로 그 경쟁률(10:1 정도)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입시에서 지원자는 대입자격시험성적과 고교내신성적 외에도 각 대학이 주관하는 교직적성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교사양성은 현재 11개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학부와 일반 전공학교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교과교사의 전공준비는 일반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직 준비과정은 교육학부가 책임지고 있다. 교육학부는 유치원교사, 학급교사(초등), 특수교사, 상담교사, 가정기술교사와 음악교사 중 일부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급교사와 과목교사 모두 석사과정까지 이수해야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학급담당교사는 양성과정에서 교수방법론, 이론적 관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응용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한다. 교사들은 총체적 관점에서 학생의 발달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수업현장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기방식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의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교원양성과정의 학생들에게 독립적 사고력과 교육적 문제해결력, 연구역량을 동시에 요구된다. 핀란드의 초등담당학급교사들 중에는 재직하는 동안 추가로 전공학점을 더 이수하여 교과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과교사 양성은 일반대학 학부에서 이루어지며, 교육학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학생들은 대학지원 당시 과목별 교사 양성과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또한 일부 교사는 일반

대학 학위를 마친 후 교직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과교사가 될 수 있다. 교직 강의는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되,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종합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기관 등에 초점을 두고 선택을 한다. 야성과정에서 학생들의 헌신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며, 개별적 혹은 협력적으로 수업경험을 쌓아서 교사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교수법 강의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상을 체득하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지적 전문성과 함께 학생들의 사회적·도덕적·심리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된다.

#### 4. 새로운 교육평가 프로그램 도입

핀란드 정부는 최근 교육정책 결정권을 지방(시단체, 자치구 등)으로 이관하였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사회 변화의 가속화가 다양한 개발 요구를 증폭시키며,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성과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조되고 수요자중심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핀란드의 전체 교육제도의 기능을 평가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기관의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공급자들과 학교 측에서 무엇보다 평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평가체제가 일관성이 있고, 예측가능하며, 개발 목적과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03년 4월 1일 4년 임기의 핀란드 교육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평가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평가와 개발에 책임을 지며 국가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설립은 조정, 조율된 평가활동과 관련된 네트워크 개발뿐 아니라 독립적인 교육평가를 위한 더 나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프로그램 공급자, 교육기관, 교육행정부, 교원조직, 학생조직, 그리고 직업인과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단체로 구성되며, 14명의 위원은 교육평가와 연구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차원 그리고 국제 수준의 평가에서 프로그램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각종의 전문적 의견과 지식에 귀기울여 참고할 만한 사항을 가려내는 것이다. 위원회의 2004-2007의 평가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평가와 개발 활동들의 기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제도별(체계별), 테마별, 상황별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목표에 맞추어 공학보조(technology-aided) 평가 환경 개발에 힘쓰며 교육프로그램 공급자들과 교육기관들의 자체 평가를 돕고, 전국적 그리고 지역적 평가 결과 자료들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는 데 노력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평가 연구를 통해 교육평가 문화의 발전과 평가 체계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바람직한 선례 개발에 주안점을 둔다.

핀란드 교육평가 위원회는 교육평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퍼뜨리고 조직망 실행 선례가 확고해지

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질과 더불어 교육평가제도의 질을 평가를 통해 제고하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평가 자료들을 산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위원회는 정보 교환, 공유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 공급자와 학교가 보다 정확한 환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강영혜(2007).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학교 운영 실제. 현안보고 OR 2007-3-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8 핀란드의 교육평가 동향.

〈[http://www.kice.re.kr/ko/board/view.do?article\\_id=75888&menu\\_id=10200](http://www.kice.re.kr/ko/board/view.do?article_id=75888&menu_id=10200)〉

Educational Statistics, Statistics Finland.〈[http://www.stat.fi/til/kotal/index\\_en.html](http://www.stat.fi/til/kotal/index_en.html)〉

Ministry of Education Finland 〈<http://www.minedu.fi/OPM/?lang=en>〉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학회 활동 안내

## 1. 제37대 학회 조직 구성

### 가. 회장단

회 장: 신재철(전남대)  
감 사: 정성수(남: 인제대), 이선호(여: KEDI)

### 나. 이사회

〈당연직〉(28명)

김영식, 이 중, 신극범, 김윤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선임직〉(35명)

공은배(KEDI)	김남순(조선대)	김성열(평가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이경(충남대)	김재웅(서강대)	김태완(계명대)	김홍주(KEDI)
박남기(광주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세훈(전북대)	박영숙(KEDI)
박재윤(KEDI)	반상진(전북대)	송광용(서울교대)	송기창(숙명여대)
신현석(고려대)	엄상현(교육과학기술부)	염민호(전남대)	유현숙(KEDI)
이윤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임연기(공주대)	임용순(강원대)
임천순(세종대)	정연한(한국외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최충욱(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허병기(교원대)		

### 다. 분과위원회

#### 1) 기획위원회

위 원 장: 신현석(고려대)  
부위원장: 박상완(부산교대)  
위 원: 박선형(동국대), 신정철(서울대), 이병식(연세대), 이석열(남서울대),  
정수현(서울교대), 채재은(경원대), 한신일(성균관대)

## 2) 학술위원회

위 원 장: 한유경(이화여대)

부위원장: 신상명(경북대)

위 원: 김병찬(경희대), 김희규(신라대), 남수경(강원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이정미(KEDI), 하봉운(경기대)

## 3) 편집위원회

위 원 장: 박세훈(전북대)

부위원장: 김혜숙(연세대)

위 원: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동석(한남대), 김재웅(서강대), 박소영(숙명여대),  
손희권(명지대), 오현석(서울대), 윤홍주(춘천교대), 홍창남(부산대)

## 4) 국제학술위원회

위 원 장: 김이경(충남대)

부위원장: 고전(제주대)

위 원: 공병호(오산대), 권인택(전북대), 김갑성(KEDI), 양정호(성균관대),  
우명숙(한국교원대), 이태상(상지대), 황준성(한국교총교육연구소)

## 5) 홍보·규정위원회

위 원 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부위원장: 김순남(KEDI)

위 원: 김병주(대교협), 김용(청주교대), 김정희(대교협), 양성관(건국대),  
염철현(한국디지털대), 이수정(단국대), 최창섭(강릉대)

## 6) 재정·기금위원회

위 원 장: 송기창(숙명여대)

부위원장: 김병주(영남대)

위 원: 강경석(인하대), 김현진(국민대), 나민주(충북대), 박종필(전주교대),  
이 강(초당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 7) 학술편찬위원회

위 원 장: 이윤식(인천대)

부위원장: 이일용(중앙대)

위 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노종희(한양대), 박재운(KEDI),  
박종렬(대교협), 서정화(홍익대), 임천순(세종대), 정영수(충북대)

## 8) 정책연구위원회

위 원 장: 박영숙(KEDI)

부위원장: 전제상(경주대)

위 원: 김수영(강릉영동대), 박보배(국제교육진흥원), 박삼철(단국대),  
박승희(이화 여대), 유길한(진주교대), 유웅상(KEDI), 이장익(아주대)

## 9) 윤리위원회

위 원 장: 허병기(교원대)

부위원장: 조석훈(청주교대)

위 원: 김용일(한국해양대), 박수정(안양대), 우정기(경성대), 이광현(부산교대),  
이제봉(울산대), 정희욱(목포대), 조남근(세명대)

## 10) 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

위 원 장: 조동섭(경인교대)

부위원장: 유현숙(KEDI)

위 원: 김민희(충북대), 박호근(한국체대), 반상진(전북대), 성병창(부산교대),  
이차영(한서대)

## 11) 소식논문상위원회

위 원 장: 정태범(전 교원대)

부위원장: 강영삼(전 국민대)

위 원: 강무섭(강남대), 강인수(수원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전 국민대),  
이종재(전서울대), 주삼환(전 충남대), 허병기(교원대, 2007년 학술지 편집위원장)

## 2. 학술대회

### ❖ 제152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4월 25일(토) 09:00-18:00
- 장 소 : 경북대학교
- 주 제 : 대학입시 자율화-그 의미와 과제

### ❖ 제153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6월 27일(토) 10:00-16:30
- 장 소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용봉홀
- 주 제 : 학교자율화 시대 교장의 핵심역량 증진 방안

### ❖ 제154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24일(토)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 제37차 연차대회 및 155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2월 12일(토) 10시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시청각실
- 주 제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 3. 학술집담회

### ❖ 제 3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집담회

- 일 시 : 2009년 8월 22일(토) - 23일(일)
- 장 소 : 지리산 산동지역
- 내 용 : 「교육행정학 연구방법 특강」과 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

## 회의 개최 현황

###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서울교대 본관 7층 회의실
- 안 건 : 200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 제1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2월 13일(금) 12:00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2009년 상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3월 6일(금) 12:00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학회지 편집 건

### ❖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일 시 : 2009년 4월25일(토)
- 장 소 : 경북대학교
- 안 건 : 200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제2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4월25일(토)
- 장 소 : 경북대학교
- 안 건 : 2009년 하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 제1차 소식논문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12시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소식논문상 선정 작업 추진

❖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12시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제37대 부회장 재선출 건

❖ 제1차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서울 에스카그린
- 안 건 : 부회장 선거 일정 확정 및 관련 사항 검토

❖ 제2차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10월 9일(금) 11시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부회장 후보 선정 건

❖ 제2차 소식논문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12시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소식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건

##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7권 (2009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③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계 재 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2008년까지: 300,000원, 2009년부터: 400,000으로 연구비 수혜 논문 게재료 인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입금계좌: 우체국 501072-02-315947      예금주: 신재철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09. 8. 1 ~ 2009. 10. 31)**

- 일반회원: 강일국, 김경화, 김래영, 김영덕, 김용학, 김지선, 김진수, 김태호, 문희경, 신철균, 안효정, 윤희경, 이광수, 이상희, 이성은, 이혜정, 임영애, 정주영, 최영진, 한은정, 황나겸, 황준영 (이상 22명)
- 학생회원: 김승천, 김정희, 박인철, 서지혜, 주정민, 조태현 (이상 6명)

※ 정보가 잘못 표기되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입현황(2009. 8. 1 ~ 2009. 10. 31)**

- 일반회원: 강정삼, 김경화, 김덕근, 김도기, 김병운, 김수구, 김연성, 김종기, 김종철, 나민주, 노희정, 박삼철, 박성식, 박소영, 박승란, 박용진, 박정주, 박종필, 박진형, 박철용, 박형우, 서보근, 서용희, 손병철, 송선영, 신운섭, 신정철, 신진, 신현석, 심학경, 오세희, 유경근, 유평수, 유현숙, 원용길, 이기용, 이낙중, 이난영, 이남호, 이덕난, 이석경, 이석열, 이용철, 임연기, 임천순, 장석환, 전상훈, 정성수, 정수현, 정진환, 정희욱, 조영진, 주철안, 주현준, 채재은, 최영표, 최재광, 한경수, 한상연, 한신일, 황신택, 황현주, 홍광식 (이상 63명)
- 기관회원: 국회도서관, 경인교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평택대학교, 서울대중앙도서관 (이상 5개 기관)

※알립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아래의 회원님께서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6일 '학회비'로 100,000원,
- 8월 17일 '입회비연회비'로 60,000원,
- 10월 15일 '연회비'로 50,000원,
- 10월 27일 '김영보경원고'로 50,000원
- 10월 29일 '입회비연회비'로 30,000원 입금하신 분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동정

### ❖ 축하드립니다.

이수정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단국대 교수(교직교육과)로 임용.

김용일 : 김용일(2009).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개정증보판). 서울: 문음사.

주삼환 : 주삼환(2009). 불가능의 성취(교육칼럼수상집). 서울: 학지사.

박소영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

박수정 : 안양대학교 교수로 임용

## 주요 소식

### ❖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료, 한국, 일본, 영국, 중국 대표 발표

신현석 교수 "The Current Stat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발표  
신재철 회장 등 10명 대표단 히로시마 대학 방문, 협정서 조인 2년 마다 공동주최 합의

한국교육행정학회와 일본교육행정학회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는 한·일 국제 세미나가 국제심포지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 개최되었다. 10월 17일 히로시마 대학에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신재철 회장(전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번 '제 1회 한·일 국제심포지엄'에는 주최국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영국, 중국의 학자가 참여하여 교육행정연구의 현안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 대표인 신현석 교수(고려대학교)는 "The Current Stat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 대표로는 Toshiyuki Omomo(Tohoku University), 영국 대표로는 Meagan Crawford(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중국 대표로는 Tianshan Seng(China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등이 참여하여 각 국 교육행정 연구의 현안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신재철 회장은 일본교육행정학회장인 오가와 마사이토(小川 正人, 放送大學) 교수와 '국제심포지엄 공동 주최에 관한 협정'에 조인했다. 이번 협정은 그동안 14회에 걸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국제학술대회 취지를 계승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래 '협정서' 참조). 협정에 따라 2011년 한·일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주관한다.



〈일본교육행정학회장인 오가와 마사이토(小川 正人, 放送大學) 교수와 한국교육행정학회 신재철 교수의 '국제심포지엄 공동 주최에 관한 협정'조인식〉



〈한·일 국제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의 공동 주최에 관한 협정

국제 심포지엄 공동 주최에 관한 협정

제 1 조 (목적)

日本教育行政学会と韓国教育行政学会は、この間 14 回にわたる日本と韓国両国間の国際学術大会の趣旨を継承して、国際シンポジウム（以下、シンポジウム）を共催することに合意し、シンポジウムの円滑な運営を行うためにこの協定を締結する。

제 2 조 (開催の時期及び場所)

シンポジウムは 2 年に 1 回、日本と韓国において交代で開催する。開催時期及び開催場所は開催国の学会が決定する。なお、2009 年は日本において開催する。

제 3 조 (テーマ及びパネラー)

シンポジウムのテーマ及びパネラーは開催国の学会が決定し、パネラーの委嘱も開催国の学会が行う。なお、パネラーには両学会の発表者を含むものとする。

제 4 조 (報告書)

開催国の学会は、シンポジウム開催の翌年に報告書を刊行する。報告書は開催国の言語で記述し、各発表論文の英文抄録を掲載する。必要な場合、報告書は発表論文を相手国の言語に翻訳して掲載する。

제 5 조 (経費)

シンポジウムの開催経費は、開催国の学会が負担する。経費にはパネラーの旅費、滞在費及び報告書の刊行に要する経費を含むものとする。

제 6 조 (その他)

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係るその他の事項は、両学会の協議によって決定する。

제 7 조 (協定の発効及び解消)

この協定は 2009 年 10 月 17 日から発効し、両学会の合意によって修正、もしくは解消することができる。

제 8 조 (正本)

両学会はこの協定書の正本 2 通を日本語と韓国語で各々作成し、各学会は日本語および韓国語で作成された正本各 1 通を保管する。

제 1 조 (목적)

한국교육행정학회와 일본교육행정학회는, 그 동안 14 회에 걸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국제학술대회의 취지를 계승하여 국제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심포지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개회 시기 및 장소)

심포지엄은 2 년에 1 번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개회 시기 및 개회 장소는 개최국의 학회가 결정하되, 2009 년은 일본에서 개최한다.

제 3 조 (주제 및 패널)

심포지엄의 주제 및 패널은 개최국의 학회가 결정하고, 패널의 위촉도 개최국의 학회가 결정한다. 단, 패널리스트에는 양국 학회의 발표자를 포함한다.

제 4 조 (보고서)

개최국의 학회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다음 해에 보고서를 간행한다. 보고서는 개최국의 언어로 기술하고, 각 발표 논문의 영문 초록을 게재한다. 필요할 경우, 보고서는 발표 논문을 상대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다.

제 5 조 (경비)

심포지엄의 개최 경비는 개최국의 학회가 부담한다. 경비에는 패널리스트의 여비, 체류비용 및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제 6 조 (기타)

심포지엄의 개최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양쪽 학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7 조 (협정의 발효 및 폐기)

이 협정은 2009 년 10 월 17 일부터 발효되고, 양쪽 학회의 합의에 의해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8 조 (정본)

양쪽 학회는 이 협정서의 정본 2 통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작성하며, 각 학회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작성된 정본 각 1 통을 보관한다.

2009 年 10 月 17 日

2009 年 10 月 17 日

日本教育行政学会会長

小川正人

韓国教育行政学会会長

신재협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신재협

일본교육행정학회 회장

小川正人

〈한·일 국제심포지엄 공동 주최에 관한 협정서〉

❖ 제37대 및 제38대 부회장 선출  
10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실시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는 께석이 된 제37대 부회장을 10월 중에 선출하고, 제38대 부회장은 11월 중에 선출한다. 우편 투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제37대 부회장 선거가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제38대 부회장 선거가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실시된다. 제37대 부회장 보궐선거는 전 부회장(차기 회장)인 진동섭(전 KEDI 원장)교수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직으로 임명되면서 부회장직을 사직하였기 때문이다. 제37대 부회장 후보로는 당연직 이사 추천을 받은 송광용 교수(서울교육대학교)와 임연기 교수(공주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제37대 부회장 선거 결과는 11월 6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제38대 부회장 선거결과는 11월 29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선거권자는 학회 회칙 제15조 6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정회원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 제154차 추계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서 성료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60여명 참여  
박사학위 논문 발표자에게 기념패 수여도

'지식융합시대의 한국교육'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학회 주관 하에 개최된 2009 추계학술대회(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4차 학술대회)가 성료되었다. 지난 10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남수경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명의 발표자가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손희권 교수(명지대학교)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 및 과외 규제 법안들의 헌법적합성 검토'를, 김상돈 박사(국민대학교)가 '학교장의 감성적 지도성과 학교조직 개방성이 학교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상훈 박사(고려대학교)가 '동학년 교사 집단 효과성 영향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양수경 박사(한국교육개발원)가 '방과 후 학교 성과 분석: 학생들의 학업 성취, 사교육비, 문제행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토론자로는 나민주 교수(충북대학교)와 김현진 교수(국민대학교)가 참여하였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의 사회로 각 주제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각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연구방법에 관해 심층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김상돈 박사와 전상훈 박사에게 학회의 연구 분위기 진작에 기여한 공을 기념하여 학회가 제작한 기념패를 수여했다.



〈 제154차 추계학술대회 〉



〈 박사학위논문 발표자 기념패 수여 〉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주제로  
제155차 학술대회 오는 12월 12일 서울교육대학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5차 학술대회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오는 12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교육대학에서 열린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책무성 평가에 대한 대학 내외의 관심을 반영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발표와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등 5명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또한 토론자로는 변기용 교수(고려대학교) 등 10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아래와 같다.

10:00 - 10:30	등 록	
10:30 - 10:50	[ 개 회 식 ] 인사말씀	신재철(한국교육행정학회)
10:50 - 11:10	[ 기 조 발 표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발표 : 박종렬(대학교육협의회)
11:10 - 11:50	[ 주제발표 1 ]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	발표 : 천세영(충남대학교) 토론 : 변기용(고려대학교) 백정하(대학교육협의회)
11:50 - 12:30	[ 주제발표 2 ] 자율화 시대의 대학의 질 보장	발표 :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토론 : 신정철(서울대학교) 신현석(고려대학교)
12:30 - 14:00	[ 점 심 ]	
14:00 - 14:40	[ 주제발표 3 ]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발표 :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토론 : 반상진(전북대학교) 남수경(강원대학교)
14:40 - 15:20	[ 주제발표 4 ] 대학의사결정구조와 총장선출방식	발표 :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토론 : 강원근(전주교육대학교) 하봉운(경기대학교)
15:20 - 16:00	[ 주제발표 5 ] 대학의 책무성 평가	발표 : 이영호(서울기독대학교) 토론 : 채재은(경원대학교) 조영해(경희대학교)
16:00 - 16:30	[ 종 합 토 론 ]	
16:30	[ 폐 회 ]	

##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http://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mailto: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 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 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 해 주십시오.

####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회비납부 : 온라인 입금 (광주은행 074-107-495294 예금주: 신재철 한국교육행정학회)

###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405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62)530-0625
- F A X : 062)530-2359
- 회 장 : 신재철 (062-530-2350, 011-9770-2038)
- 사 무 국 : 염민호 사무국장(062-530-2597, 010-3157-4517)  
김소영 총무간사(062-530-0625, 010-9961-7373)  
김재홍 편집간사(016-622-3664)

##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